

[별지 제1호] <개정 2016. 12. 6., 2024. 7. 1.>

임원 선임 및 사임 보고

문서번호 에이피 2024-97

2024.12.27.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사)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끝.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선 (인)



작성 자 :	황혜림 (직 위)대리
전화번호 :	02-783-9670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¹⁾	겸 직 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책무 ⁴⁾	책무 세부내용 ⁴⁾
이성민	李成政	701112	2024.12.20. (24.12.20, 1회)	2027.12.19	감사	17.08~20.05 유진자산운용 20.05~23.05 현대자산운용 23.08~현재 핀토	(주)핀토 CEO (2023.08~ 현재)	적격	금융영업 관련 책무	집합투자업무와 관련된 책무 투자자문업무와 관련된 책무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책무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금융영업 관련 책무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재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한 책무 및 그 세부내용을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 고
대표이사 (상임/등기)	이재선 (李在善)	751008	2024.11.08. (21.09.08,2회)	2027.11.07	01.07~06.09 유진투자증권 06.09~21.09 유진자산운용 21.09~현재 에이피자산운용	무	적격
대표이사 (상임/등기)	김형석 (金亨碩)	890209	2024.11.08. (24.11.08,1회)	2027.11.07	18.12~21.11 아이엠퍼레이션 21.12~22.04 오션스파트너스 22.05~23.12 아레스인베스트 24.10~현재 에이피자산운용	무	적격
사외이사 (비상임/등기)	신병섭 (申秉燮)	841001	2023.12.08 (23.12.08,1회)	2026.12.07	16.08~20.02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20.02~22.09 공동법률사무소 김파트너스 22.09~현재 법무법인 김파트너스 23.12~현재 에이피자산운용	법무법인 김파트너스 변호사	적격
감사 (비상임/등기)	이성민 (李成政)	701112	2024.12.20. (24.12.20, 1회)	2027.12.19	17.08~20.05 유진자산운용 20.05~23.05 현대자산운용 23.08~현재 핀토	주식회사 핀토 CEO	적격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주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임원 사임 현황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사임사유 ¹⁾	비 고
감사 (비상임/등기)	김명훈 (金明勳)	700522	2024.03.30. (21.03.30,2회)	2024.12.20	일신상의 사유	

주 1) 사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이성민	직 위	감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판단사유 ¹⁾	비 고
<공통사항>		해당사항없음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이성민	직 위	감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판단사유 ¹⁾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성 명	이성민	직 위	감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판단사유 ¹⁾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없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중 합 의 견 징계내역 없음으로 정직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2024년 12월 27일 에이피자산운용 임원 이성민 (인) 에이피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재선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